

## ◎기상청공고 제2022-173호

「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2일

기상청장 유희동

###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용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천리안위성 1호 기상 탑재체 임무 종료(2020. 4. 1.), 천리안위성 2A호(기상·우주기상 탑재체)를 통한 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(2019. 7. 25.~) 및 천리안위성 2B호(환경·해양탑재체) 운용 시작(2020. 2. 19.) 등 천리안위성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훈령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천리안위성 탑재체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훈령과 구분하기 위하여 훈령의 제명을 「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」에서 「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」으로 변경
- 나. ‘기상위성’, ‘기상 탑재체’ 및 ‘우주기상 탑재체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
- 다.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(안 제7조)
- 라.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정비함(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(관보게재일+20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27803)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-18(광혜원리 636-10)

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

- 전자우편: jhchoi75@korea.kr

- 팩스 : 043-717-0255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(전화: 043-717-025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